

서울특별시 마포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15-112
----------	--------

제출년월일 : 2015. 11. .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제정사유

긴급복지지원 사유인 위기상황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긴급복지지원법(2015.7.1.시행)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위기 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기상황에 해당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3조)

- 구청장이 인정하는 위기사유를 폭넓게 인정하여 긴급복지 실효성을 확보하고 사업을 원활히 추진

나.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은 「마포구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마포구 생활보장위원회에서 대신함을 규정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1조의2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라. 규제여부 :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에 해당
 되지 않음

4. 기타사항

- 가 입법예고 : 2015. 10. 08. ~ 10. 28 (제출된 의견 없음)
- 나.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 자율평가 결과 : 원안 동의
- 다. 가정복지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 분석평가 결과 : 원안 동의
- 라. 일부 조문 수정

구청장 방침	심의회 상정안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9. 실직, 폐업 등의 사유로 수도, 가스 등 사용료 체납으로 공급이 1개월 이상 중단되고 생계가 어려운 경우 10.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를 최근 6개월 이상 체납되고 생계가 어려운 경우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9. 실직, 폐업 등의 사유로 수도, 가스 등 그 사용료를 체납하여 공급이 1개월 이상 중단되고 생계가 어려운 경우 10.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를 최근 6개월 이상 체납하고 생계가 어려운 경우

- 마.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의결(2015. 11. 13.)
- 바. 서울특별시 마포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1부.
- 사. 서울특별시 마포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비용추계서 1부.

서울특별시 마포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라 위기상황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위기상황을 맞은 가구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이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2.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긴급복지지원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구원 간병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출산 전·후 6개월 이내인 대상자가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취학 전 아동의 양육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다만, 장애아동 등 요보호 아동은 연령기준을 미적용하고, 종일제 어린이집 이용 가구는 제외
4. 주 소득자의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5. 아동과 동거하는 가구가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등에서 거주하는 경우
6. 부모 등 보호자의 가출, 알콜·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이고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다만, 본인이 포기하거나 자활사업 참여 거부 등의 이유로 보장중지된 경우 제외
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신청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이고 생계가 어려운 경우
9. 실직, 폐업 등의 사유로 수도, 가스 등 그 사용료를 체납하여 공급이 1개월 이상 중단되고 생계가 어려운 경우
10.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를 최근 6개월 이상 체납하고 생계가 어려운 경우
11. 실직, 폐업 등의 사유로 월세 등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미납하고 생계가 어려운 경우로 월세 차감 후 보전되어 있는 보증금이 주거지원 금융재산 기준 이하인 경우
12. 그 밖에 구청장이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보장위원회에서 대신한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지원하고 있는 긴급지원대상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지원한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긴급복지지원법」제9조제1항1호에 따른 생계, 의료, 교육 등 급여지원에 대한 비용 발생

2. 비용추계의 전제

- 긴급복지지원사업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의 연중지원 사업임.
- 2014년 긴급지원사업 추진실적
 - 총예산 : 575,319천원 (본예산 212,965천원, 추경진행)
 - 총집행 : 486,798천원 (집행률 85%)
 - 지원가구 : 545가구
- 2015년 긴급지원사업 집행실적 ('15.01~'15.10)
 - 총예산 : 891,854천원 (본예산 691,854천원, 추경진행)
 - 총집행 : 790,004천원 (집행률89%)
 - 지원가구 : 1,076가구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015년)	2차년도 (2016년)	3차년도 (2017년)	4차년도 (2018년)	5차년도 (2019년 이후 계속)	합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국비 보조금	445,928	452,298	452,298	452,298	452,298	2,255,120
	시비 보조금	222,963	226,149	226,149	226,149	226,149	1,127,559
	구비 보조금	222,963	226,149	226,149	226,149	226,149	1,127,559
	소계(b)	891,854	904,596	904,596	904,596	904,596	4,510,238
□ 총 비용(a-b)		891,854	904,596	904,596	904,596	904,596	4,510,238

4. 재원조달 방안 : 2015년 예산 일반회계로 편성

5. 덧붙이는 의견 : 구체적인 세출은 차후 변경될 수 있음.

6. 작성자

작성자 이름	복지교육국 복지행정과 임근영
연락처	02-3153-8835